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8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소라, 강동길, 김 경,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아이수루, 이민옥,
,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19명)

1. 제안이유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corporate 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 또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모은 것을 뜻함.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융자 시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에 있어 융자계정의 용도에 ESG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를 추가함. (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3. <u>제5조제1항제1호</u>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p> <p>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자</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1600000070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이소라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기금의 조성)제1항제3호의 변경과 제5조(기금의 용도)제1항제6호의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기금의 구성과 용자계정의 용도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